

서울시보

Hi Seoul
SOUL OF ASIA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2985호 2010. 07. 13.(화)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반포대교 '달빛무지개 분수'와 윈드서핑

기관의 장	공 람								
선 람									



발행인 |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| 홍보기획관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☎731-6847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제37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

자 치 법 규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3759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

2010년 7월 13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변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감사관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, 언론·보도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변인의 직위를 계약직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.(안 제4조·제8조)

